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1 호)

## BSA | The Software Alliance 의견서

February 16, 2021

### 개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BSA의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BSA<sup>1</sup>는 정부와 세계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소프트웨어 산업을 대변하고 있는 BSA로, 세계 여러 나라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화 논의를 이어나가면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오늘 의견서에서는 한국 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면서 데이터 기반 기술의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의견서는 상호 운용이 가능한 개인정보 보호 방식을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고 개인과 사업자가 원하는 글로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적의 방안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아래 기재된 주제들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BSA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 개인정보 위탁자와 수탁자의 역할 인식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의 허용
- 정보주체가 가지게 되는 새로운 권리
-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기반 확대
-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 개인정보 침해 시 알람 기준
-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 과도할 수 있는 현장조사 규정
- 법 위반으로 초래된 결과에 따른 과태료 산정 방식

BSA 회원사들은 타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 인적 자원 관리 프로그램, ID 관리 서비스, 보안 솔루션 및 협업 소프트웨어 등 모두 협업을 위해 중요한 기술들입니다. BSA 회원사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술 및 제품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이며, 사용자의 데이터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의존하지

---

<sup>1</sup> BSA | The Software Alliance ([www.bsa.org](http://www.bsa.org))는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세계 시장에서 전 세계 소프트웨어 업계를 대변하는 BSA입니다. 세계의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이 회원사로 참여하여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현대 생활을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현재 워싱턴 DC에 본사를 두고 총 30개가 넘는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BSA는 합법적 소프트웨어 사용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활동을 선도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추진하는 공공 정책을 지지합니다.

BSA 회원사: Adobe, Amazon Web Services, Atlassian, Autodesk, AVEVA, Bentley Systems, Box, Cadence, Cisco, CNC/Mastercam, DocuSign, IBM, Informatica, Intel, MathWorks, Microsoft, Okta, Oracle, PTC, Salesforce, ServiceNow, Siemens Industry Software Inc., Sitecore, Slack, Splunk, Synopsys, Trend Micro, Trimble Solutions Corporation, Twilio, and Workday.

않습니다. 또한, 회원사들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책임감 있게 다루어야 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정보를 일부 BSA 회원사들에게 맡기고 있고, 회원사들은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BSA 회원사들은 기업들이 원격 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고, 운영의 연속성<sup>2</sup>을 보장하고 있으며, 코로나 19<sup>3</sup>와 같은 전염병 확산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연구원과 최초 대응자에게 제공하는 것까지, 기업의 사회적 및 경제적 목표를 진전시킬 수 있는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SA 가 보내 드리는 의견서가 긍정적으로 고려되어 새롭게 개정될 개인정보보호법이 한국의 소비자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목표를 진전시키는 동시에, 글로벌 규범과 상호 운용 가능하게 하여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적인 데이터 사용을 촉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소견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들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규정을 개발하거나 개정함에 따라, 이러한 규범의 기본 골자가 국제적으로 상호 운용 가능하고,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하며, 효과적으로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첨단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AI)과 같은 유망한 신기술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SA 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시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력을 제공하고, 데이터 보안 의무를 강화하며, 합법적인 비즈니스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을 촉진하고,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보호의 기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sup>4</sup>.

BSA 는 혁신과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유연성을 제고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체계 역시 개선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제안된 바와 같이 개인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들이 한국 정부의 의지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제언 부분에서는 새로운 정책 트렌드와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범 방향을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BSA 의 의견과 추가적 제언을 담았습니다.

---

<sup>2</sup> BSA's Response & Recovery Agenda at: <https://www.bsa.org/files/policy-filings/05272020bsaresponserecoveryagendaa4.pdf>

<sup>3</sup> COVID-19 Response: Software Solutions Enable Vaccine Research, Security, Safe Distribution at: <https://software.org/news/covid-19-response-software-vaccine-research-security-distribution/>

<sup>4</sup> See BSA Global Privacy Best Practices at: [https://www.bsa.org/files/policyfilings/A4\\_2018\\_BSA\\_Global\\_Privacy\\_Best\\_Practices.pdf](https://www.bsa.org/files/policyfilings/A4_2018_BSA_Global_Privacy_Best_Practices.pdf).  
In Korean at [https://www.bsa.org/files/policyfilings/A4\\_2018\\_BSA\\_Global\\_Privacy\\_Best\\_Practices\\_ko.pdf](https://www.bsa.org/files/policyfilings/A4_2018_BSA_Global_Privacy_Best_Practices_ko.pdf).

## 제언

### 개인정보 위탁자와 수탁자의 역할 구별

개인정보보호법 제 26 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를 제 3 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사용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기업(위탁자)과 다른 기업을 대신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업(수탁자)의 구별은 중요한데, 이는 수탁자와 위탁자 모두 개인정보 보호에 중요하면서도 뚜렷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세계적 추세에 따라 개인정보 위탁자와 수탁자의 두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있어 각자 다른 기업의 역할을 반영하여 각 유형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의 일부 조항이 앞에서 설명했던 각자 다른 역할을 가진 개인정보처리자와 관리자의 뚜렷한 역할을 규정하지 못하면서, 개인정보보호의 발전 목표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BSA 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첫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수탁자(제 3 자)는 소비자와 직접 연관된 보호의무와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명시 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 정보주체와 직접 연관된 보호의무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의무와 개인정보 접근 또는 삭제 요청과 같은 정보주체의 권리 요청에 따라 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뜻 합니다.
- 이러한 소비자 보호의무는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의 의무에 속해야 합니다. 위탁자는 정보주체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시기와 이유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개별 정보주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일반적으로 계약 관계에 따라 혹은 위탁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대신 데이터를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역할에서 수탁자는 처리 중인 데이터의 특성 또는 이러한 처리가 수행되는 목적에 대해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처리의 목적은 위탁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수탁자는 위탁 받은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활용하거나, 위탁자가 지시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와 위탁자와의 계약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보호의무를 수탁자에 부과하게 된다면 수탁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분석을 해야 하고, 이는 의도치 않게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특히 수탁자가 알지 못하는 정보주체과 신원을 올바르게 인증할 수 없는 개인에게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등 수많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의무가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사생활을 의도치 않게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는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에 한정하여 부여되어야 합니다.
- **둘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수탁자가 직접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한해 중요한 보호 의무를 부여하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보안 조치를 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의 정보 보호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제시한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에 기재되어 있는 많은 소비자 보호의무를 “수탁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자에게만 적용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수탁자에게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 내 기타 조항을 식별하는 제 26 조 제 8 항을 개정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으며, 따라서 BSA 는 제 26 조 8 항을 개정하여 두 가지 의무로부터 수탁자를 제외시킬 것을 권고드립니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에 따라 의무를 부과하는 제 15 조부터 제 25 조의 2 와 제 27 조의 28 에 의해 부과되는 소비자 대면 의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탁자만 해당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을 알고 있고, 수탁자는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제 33 조에 명시된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제 34 조에 따른 위반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 (3) 제 35 조부터 제 38 조까지 명시된 정보주체의 권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와 상호 작용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반면, 수탁자는 정보주체 역시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개인정보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주체 보호의무는 개인정보의 사생활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측면이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의무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데 있어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는 기업들에게까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조치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모든 기업에게 일괄 적용하는 것은 사생활과 데이터 보안을 강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화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는 의무와 정보주체의 권리 요청에 따른 의무는 개인정보 처리자(위탁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반면, 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데이터를 처리해야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허용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기술은 현대 디지털 경제의 활력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도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기업이 책임감을 가지고 정보를 국외로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SA 는 개정안 제 28 조의 8 제 2 항을 통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방식을 추가해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또 다른 방식을 통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에 가장 최적화되고 관련성이 높은 이전 방식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BSA 는 귀 위원회가 추가 전송 방식들에 대해 인식하고 국외이전을 지원하는 데 있어 더 많은 유연성을 창출하도록 개정안 제 28 조의 8 의 내용을 추가로 개정해주시길 것을 권고드립니다.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 28 조의 8 제 2 항 개정을 통해 다른 국외 이전 방식들도 함께 인식되어야 합니다.** 다른 국외 이전 방식들이라 함은, 국외 이전을 지원하는 기업 내 바인딩 규칙, 국제적 신뢰 마크, 타 국가 인증 및 계약 약정 등을 뜻합니다. 이러한 이전 방식들은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APEC 의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CBPR), 유럽연합(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GDPR),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국외이전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다른 글로벌 데이터 보호 프레임워크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 **제 28 조의 8 제 2 항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시 별도의 동의 없이 이전을 허용해야 합니다.** BSA 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동의'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당초 정보주체로부터 받은 동의로 국외 이전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BSA는 또한 제 28 조의 8 제 3 항의 요건을 삭제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해당 조항은 기업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긴 정보 목록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국외이전 되는 개인정보 항목, 국가·시기·방법, 개인정보를 국외이전 받는 자의 성명, 개인정보를 국외이전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거부방법 및 절차 등 정보 목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범적 요구사항은 정보주체들이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 줍니다. 예를 들어, 기업들에게 개인정보 이전 방식, 이용 일시 등 리스크가 동반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보안 수준을 높이는 방식이 아닙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자’의 연락처 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자’와 교류를 제한하고, 보안상의 문제를 대처 할 때나 서비스의 중지 사태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빠른 시간 내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자’와 함께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의 효율성은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저장되거나 처리되는 곳보다는 정보를 취급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시스템과 더 연관 있습니다. 따라서, 제 28 조의 8 제 3 항의 요건 대신, 정보를 국외이전하려는 기업은 국내 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개인의 접근, 정보, 삭제, 수정 또는 기타 권리에 대한 요청을 이행할 책임을 지게 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정보주체가 가지게 되는 새로운 권리

개정안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자신 혹은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sup>5</sup>에 전송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새로운 권리를 정보주체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거부, 이의 제기 및 설명할 권리도 보장하고 있습니다.<sup>6</sup>

BSA는 정보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계획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권리와 방식을 제공하는 정보주체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의 접근 방식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정보주체의 권리는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궁극적 목표를 저해 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정안 제 35 조의 2에 따른 정보주체의 추가된 권리는 GDPR과 싱가포르의 개인정보 보호법(PDPA)에서 발견된 데이터 이동성의 권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제 35 조의 2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 또는 수탁자 모두에게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에 대한 의무가 부과하고 있어, GDPR 제 20 조<sup>7</sup> 및 PDPA 25F-J<sup>8</sup>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정보 이동성의 권리와는 멀어지게 됩니다.

<sup>5</sup> 개인정보보호법 제 35 조의 2, 제 35 조의 3.

<sup>6</sup> 개인정보보호법 제 37 조의 1, 제 37 조의 2

<sup>7</sup> <https://gdpr.eu/article-20-right-to-data-portability/>

<sup>8</sup> <https://sso.agc.gov.sg/Acts-Supp/40-2020/Published/20201210?DocDate=20201210#pr14->

이와 같이 개정안을 통해 제안된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로 오인하여 회사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탁자는 비즈니스 고객을 대신하여 일반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정보주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해당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정보 주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그러한 요청을 수용하도록 요구한다면, 수탁자가 정보주체로서 인증할 수 없는 개인에게 정보주체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사생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BSA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수탁자를 제 35 조의 2에 따른 의무에서 배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과 관행에 기초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유연하게 구현되도록 하여 기업들의 법적 의무를 최소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설명하고, 특정 유형의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정보주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BSA는 자동화 의사결정을 설명을 받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넓히기 보다는 정보주체의 반대 권리에 초점을 맞추어 정보주체 권리의 범위를 축소 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 활동은 다양한 분야의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자동화된 의사 결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 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귀 위원회에서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의사결정 활동의 "설명성"을 개선하는 국제적인 노력과 글로벌 표준의 발전을 지원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기반 확대

개인정보보호법의 제 15 조 1 항은 현재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해 몇 가지 개별적 법적 근거에 의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필요한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BSA는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임시 처리를 허용하려는 개정안 제 15 조 1 항 7 호에 대해 추가 의견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BSA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 이외에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제 15 조 1 항을 지지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서도 중요한 기반이 되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계약을 이행하거나 다른 특정 유형의 정보처리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사용에 동의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제 15 조제 1 항에 따른 처리 근거 중<sup>9</sup> 일부가 너무 좁은 틀에 묶여 있는 것이 우려됩니다.

BSA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 조제 1 항제 6 호에 따른 처리 근거를 다른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정당한 이익"의 기준에 더 부합하도록 확대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정당한 이익"을 위한 처리 근거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위험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혁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15 조 1 항 6 호의 "정당한 이익"의 근거가 "타당한 이익"의 근거와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 6 항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은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증거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좁은 틀에서 개인정보의

<sup>9</sup> 개인정보보호법 제 15 조 1 항 6 호

수집·이용의 근거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익”의 근거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통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정당한 이익”의 근거를 활용해 부정행위 탐지 및 방지, 사이버 보안 조치를 통한 네트워크 모니터링, 감지 및 보호,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 업데이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BSA는 귀 위원회가 글로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연성과 규제적 확실성을 창출할 수 있는 추가 근거를 반영하여 제 15 조 제 1 항 6 호의 정의를 확대해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 자율규제단체 지정

개정안 제 13 조 제 2 항과 제 13 조 제 3 항은 귀 위원회의 지원으로 개인정보를 규제하는 임무를 맡게 될 다양한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를 대표하는 "자율규제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BSA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단체의 책임을 증진하여 개인보호를 강화하려는 위원회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또한 제안된 "자율규제단체"가 귀 위원회가 기술,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민관 협력 파트너십의 형태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율규제단체'가 자발적으로 산업 규약의 초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귀 위원회의 가이드라인과의 중복 규제 혼란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구분이 선제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BSA는 현재 개정안 제 13 조 제 3 항과 제 13 조 제 3 항에 자율규제단체 관련 인센티브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관련하여 법상 '자율규제단체'의 세부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해 나가실 때, 유의미한 이해관계자 미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어 '자율규제단체'의 지정과 역할, 책임,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율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시기 요청 드립니다. 자율규제단체는 산업 규약을 통해 특정 부문을 대표하고 규제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BSA는 자율규제단체와 관련하여 향후 이해관계자 미팅에서 더 자세한 견해를 전달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 시 알람 기준

BSA는 글로벌 시장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 침해 알람 요구사항을 지원하여 개인정보의 강력한 보호를 보장하려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는 심각한 침해 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위해성을 기준으로 침해 신고의 정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보고할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며, 통보 시 요구 사항에 대한 적절한 예외사항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BSA는 귀 위원회가 개정안 제 34 조 1 항을 개정하시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침해 (도용, 무단 열람, 금융사기의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비암호화 사태) 발견 시 **과도한 지연** 없이 보호주체에게 이점을 통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명시 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개정안 제 20 조의 2 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 및 수탁자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사용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통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 처리하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에 대한 투명성을 향상시키며 EU GDPR<sup>10</sup>, 캐나다의 개인정보 보호

<sup>10</sup> <https://gdpr.eu/article-12-how-controllers-should-provide-personal-data-to-the-subject/>

및 전자문서법<sup>11</sup>, 호주의 개인정보보호법<sup>12</sup>에서도 권고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보호 방식은 소비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비스와 상호 작용하면서 이러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접근 할 수 있게 됩니다. BSA 는 제 20 조의 2 에 명시된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요구사항은 제 30 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최신으로 유지하고 정보주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BSA 는 제 30 조의 2 에서 제안된 개정안이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요구에 따라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사항을 검토하는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부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토 과정의 내용과 그 요구가 제기될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BSA 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검토 요청서 제출 절차와 검토 기준을 개발할 시 국제 모범 사례에 기반하여 유의미한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정보주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 20 조의 2 및 제 30 조에 따른 의무에서 수탁자를 제외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과도할 수 있는 현장조사 규정

개정안의 제 45 조제 2 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BSA 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식들을 지원하고 하지만, 그에 대한 조치가 지나치게 부담스럽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45 조제 1 항 및 제 45 조제 3 항에 따른 현행 규정은 이미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및 분쟁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BSA 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사건 발생 시 현장조사의 권한을 삭제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 법 위반으로 초래된 피해에 따른 과태료 산정 방식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과태료의 정도는 정보주체에 미치는 피해와 위해 또는 완화 요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비례 적용 되어야 합니다. 완화 요소는 (가) 조직이 정보주체와의 문제를 얼마나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 (나) 침해 또는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다) 영향을 받는 정보주체에게 구제책을 제공했는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악화 요인으로는 (가) 위반의 고의성 또는 반복성 여부, (나) 위반 또는 위반의 위험을 합리적으로 알고 있었거나 알면서도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위반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영을 계속했는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BSA 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앞에서 강조한 완화 요인들을 종합 고려하여 민사상 처벌의 정도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sup>11</sup> [https://www.priv.gc.ca/en/privacy-topics/privacy-laws-in-canada/the-personal-information-protection-and-electronic-documents-act-pipeda/p\\_principle/principles/p\\_consent/](https://www.priv.gc.ca/en/privacy-topics/privacy-laws-in-canada/the-personal-information-protection-and-electronic-documents-act-pipeda/p_principle/principles/p_consent/)

<sup>12</sup> <https://www.oaic.gov.au/privacy/your-privacy-rights/what-is-a-privacy-policy/#:~:text=A%20privacy%20policy%20is%20a,agency%20handles%20your%20personal%20information.&text=The%20Privacy%20Act%20covers%20organisations,Australia%2C%20and%20some%20other%20organisations.>



## 마치며

BSA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과 권고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기쁩니다. BSA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의 수요에 대응하여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체제를 검토하고 보완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BSA는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해 위원회와 지속 협력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BSA의 제안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상호 발전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귀 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BSA | THE SOFTWARE ALLIANCE**